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0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4.03.25.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와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
정·변경·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안 제2조의2)
- 나.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상위법인 상위법에 따른 가축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범위를 적용하여 본 취지와 맞지 않아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의로 개정(안 제2조)
- 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른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 범위 신설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을 사육허가 시설로 명시 개정(안 제3
조제3호)

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내용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여 그 내용을 명
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시장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3396-5075, FAX: 3396-8681, 메일: msvet@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 제목 “사육허가의 절차등”을 “사육허가의 절차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u>축산법</u>」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p>
<p><신 설></p>	<p>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u>행정절차법</u>」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p>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

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 <신 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